

의안번호	2218724
의 퇴 인	이광희의원
회 답 일	2026.8.6.
추 계 번 호	26D2442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의2 (자동소화장치의 설치)	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제조·취급·저장하는 시설, 폭발성 분진 또는 유증기를 발생시키는 시설 등을 자동소화장치 의무설치 대상으로 규정하여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상시설의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의2 (자동소화장치의 설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자동소화장치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·기술적 지원(안 제10조의2)

- 개정안은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제조·취급·저장하는 시설, 폭발성 분진 또는 유증기를 발생시키는 시설 등 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- 정부는 2026년 7월 「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」을 통해 화재취약 사업장의 소방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국고보조(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,000억원,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1개소당 최대 1억원) 및 정책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, 이는 개정안에 따른 지원과 대상·요건이 동일하지 않음
- 개정안은 자동소화장치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대하여 규모와 관계없이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그 비용 완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있어,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자동소화장치 의무설치 대상시설 중 재정적 지원대상의 기준, 해당 시설에 설치할 자동소화장치의 종류와 수량, 시설 1개소당 설치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참고로, 소방청의 「2025 위험물 통계자료」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위험물 제조소 등은 108,829개소이고, 이 가운데 인화성·가연성 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일반취급소는 8,759개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